

『바다와 박물관(Ocean and Museum)』 발간 규정

제정 2025. 1.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학술 간행물인 『바다와 박물관(Ocean and Museum)』(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일) 본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고분야) 본 학술지 원고는 해양 및 박물관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반논문, 기획논문, 연구노트, 서평, 전시 비평 및 기타 박물관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을 포함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9인 이내,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③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직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구성하며, 학예연구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호선으로 선출하며, 연구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편집간사는 조사연구부장이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

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인사 발령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 결정
 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4. 학술지 논문 주제 선정, 편집·간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원고투고

제6조(원고제출 및 게재내용) ① 투고자는 [별표1]의 원고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타 학술지에 게재한 원고나 이와 중복되는 내용은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별도의 각주에서 이를 명시한다.

③ 원고 제출 시에는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5장 이내, 주제어 5개 이상)과 [별지제1호서식]의 원고투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8장 이내, keyword 5개 이상)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제출한다.

④ 공동 집필일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저자의 순으로 표시한다.

⑤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표와 도판(도면, 지도, 사진 등, 1매=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을 포함하여 200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① 투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와 박물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저작권 공동소유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4장 원고심사

제8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해 게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 원고 1편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물관의 학예연구관·부서장 혹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원고심사) ① 학술지 투고 원고는 아래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 | 1. 연구의 독창성 | 30 |
|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20 |
| | 3. 자료 분석의 정확성 | 20 |
| | 4. 논리 전개의 타당성 | 15 |
| | 5. 학술적 기여도 | 15 |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미만)’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심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 [별지제4호서식]의 투고 원고 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의 세부 기준에 맞춰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행사 발표문, 박물관 소장 유물의 조사 결과, 기획논문 등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논문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심사결과 처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

한다.

1.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 후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권고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권고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다만, 투고자는 7일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원고 투고자는 심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처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1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학술지 투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학예연구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의 자격 요건은 제8조제3항과 같이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2. 연구부정행위 확인 조사 및 조사 결과 승인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
4. 연구부정행위 징계 처리 및 후속 조치, 재심의를 처리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연구부정행위 범위)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내용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문장, 연구체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학입시, 연구기관 취업 등에 특혜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4조(이의제기 및 조사) ① 학술지 투고 및 게재 원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들을 서면으로 제보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판정 이전에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윤리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처리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본 학술지 투고 원고 등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누리집 공지 및 개별 경고문 발송

2. 지급된 원고료의 회수

3.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4.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②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제16조(자료공개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5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바다와 박물관(Ocean and Museum)』 원고 작성 원칙

1. 원고 작성

- 1)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원고는 제목, 필자명(소속과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순으로 구성한다. 영문초록은 게재 확정 후 투고자가 제출한다.
- 3) 용지 설정은 A4로 하고, 여백은 기본 여백(위 20, 아래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으로 한다.
- 4) 글자 모양은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pt(각주·인용·캡션 9pt), 줄간격 160%, 글꼴 휴먼명조로 한다.

2. 필자명 표기

- 1) 필자명은 현재 소속기관 및 직위, 전자메일주소를 포함하여 국문과 영문을 모두 기재한다.
- 2) 공동 집필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명시하고 주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시한다.
- 3)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3. 목차와 소제목

- 1) 장, 절, 항의 번호는 “ I, 1, 1), (1), ①, 가” 의 순서로 매기고,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 2)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4. 본문

-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 2)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에만 한글과 함께 괄호 속에 병기한다.
- 3) 외래·외국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5. 표와 도

- 1) 표는 상단에 <표 1> 등으로 표시하고, 제목을 단다. 필요시 단위는 제목 옆에 밝히며, 출전은 하단에 본문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2) 표를 제외한 사진, 도면, 도판, 지도 등은 하단에 <그림 1> 등으로 표시하고, 제목 또는 설명을 단다. 도판 설명은 작가와 제목, 제작연도, 재질, 크기, 소장처, 소장번호 순으로 쓴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6. 인용문

- 1) 사료(자료)의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처럼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원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주 인용문을 사용할 수 있다. 내주 인용문은 괄호 속에 저자, 발행연도, 인용쪽을 표기하여 본문 중의 인용문 뒤에 붙인다.
 - 단독연구: (홍길동, 2024), (홍길동, 2024, p.20)
 - 2인 저자: (홍길동 · 이몽룡, 2024), (홍길동 · 이몽룡, 2024, pp.20~24)
 - 3인 이상 저자: (홍길동 외, 2024), (홍길동 외, 2024, pp.20~24), (Hong et al., 2024)
 - 두 연구 이상 인용: (홍길동 외, 2024, p.20; 이몽룡, 2024a, p.24, 2024b, p.50)

7. 주

- 1)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 2) 각주는 해당 용어 또는 문장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 3) 각주 중의 한자, 외국어, 인용문의 원문은 한글 병기 없이 쓸 수 있다.
- 4) 각주에 설명과 함께 그 출처를 밝힐 때는 괄호 속에 그 출처를 기재한다.
- 5) 각주의 인용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글 논문: 필자,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권(호), 발행기관, 쪽수.
 - 한글 저서: 저자, 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쪽수.
 - 번역서: 저자(역자), 연도, 『한글 저서명』, 출판사명, 쪽수.
 - 영문 논문: 필자,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이탤릭체)*, 발행기관, 쪽수.
 - 영문 저서: 저자, 연도,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쪽수.
 - 사료(자료): 『서명』 권수, 편명
 - 전자자료: 저작권자(있는 경우), 「자료명」, 웹사이트명, URL(최종확인일자)
 - 신문기사: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일자.
- 6) 인용면수 뒤에는 ‘쪽’ 을 붙이며(영문 인용은 ‘p.’),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 7) 하나의 각주에 여러 개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쌍반점(:)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 8) 한글 문헌과 외국 문헌이 함께 서술되었을 경우, 국문,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표기한다.
- 9) 계속되는 인용에 대해서는 ‘앞의 책(논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서양 문헌의 경우는 ‘Ibid’, ‘cit’, ‘op.cit’ 를 사용한다.

8.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표와 도를 포함하여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고, 원전과 동일한 문자로 표기한다.
- 2) 작성 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에서 쪽수를 생략하여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의 나열은 1차 문헌, 사료, 한국어 문헌,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동양서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으로, 서양서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 출판연도순으로 같은 연도의 문헌은 한글 자모 및 알파벳순으로 구분한다.

9. 초록 및 주제어

- 1)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장 이내, 영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8장 이내로 작성한다.
- 2) 초록 뒤에는 주제어(Keyword)를 5개 이상 기재한다.

【별표 2】

계재 여부 결정 세부 조건

| 심 사 결 과 | | | 종합판정 |
|----------|----------|----------|--------------|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 계재 | 계재 | 계재 | 계재 |
| 계재 | 계재 | 수정 후 계재 | |
| 계재 |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계재 |
| 계재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계재 | |
| 계재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계재 | |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
| 계재 | 계재 | 계재불가 | |
| 계재 | 수정 후 계재 | 계재불가 | |
|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불가 | |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계재 | 계재불가 | |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 계재 | 계재불가 | 계재불가 | 계재불가 (반려) |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불가 | |
| 수정 후 계재 | 계재불가 | 계재불가 |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불가 | |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불가 | 계재불가 | |
| 계재불가 | 계재불가 | 계재불가 | |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논문 제목 | | (국문) | (영문) |
|----------------|----|------------------------------------|------------------------------|
| 대표저자 | 성명 | (서명) | |
| | 소속 | | |
| 교신저자 | 성명 | (서명) | |
| | 소속 | | |
| 공동저자 | 성명 | (서명) | |
| | 소속 | | |
| 연구비 지원 여부 | | <input type="checkbox"/> 예(지원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여부 | | <input type="checkbox"/> 예(특수관계인명)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바다와 박물관』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투고함에 있어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가 없음을 밝히며,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

(서명 또는 인)

『바다와 박물관』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저작권 공동소유 동의서

| 논문 제목 | | (국문) (영문) |
|-------|----|--------------|
| 대표저자 | 성명 | (서명) |
| | 소속 | |
| | 주소 | |
| 교신저자 | 성명 | (서명) |
| | 소속 | |
| 공동저자 | 성명 | (서명) |
| | 소속 | |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본 논문이 『바다와 박물관』에 게재될 경우 논문에 대한 권리와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